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9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산업통상부 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의 규격 및 문구 등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전구역 안내표지 기준 신설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6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ts08@korea.kr

2)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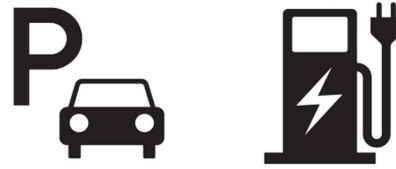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충전구역의 표시(제9조 관련)</p>  <p>출입통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u>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u>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기준에 따라 설치하 	<p>[별표 2] 충전구역의 표시(제9조 관련)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 <u>색상은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한다.</u> -----
<p>기에 부적합한 경우 색상 혹은 문자를 달리하여 표시할 수 있음</p> <p>< 신 설 ></p>	<p>----- ---- 있다.</p> <p>3. <u>충전구역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안내표지는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으로 설치하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색상·기호와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u></p> <p>(1) <u>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이상, 세로 0.6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u></p> <p>(2) <u>안내표지의 색상은 녹색 바탕에 흰색 문자로 한다.</u></p> <p>(3) <u>안내표지의 기호는 KS S ISO 7001(그래픽 심볼 - 공공 안내 심볼)의 PI TF 014 및 PI TF 044를 사용한다.</u></p> <p>(4) <u>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u></p>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 이 주차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입니다.

○ 이 주차구역에는 최대출력값이 00킬로와트인 급속(완속)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 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동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